CNU Create New University

2023학년도 제2학기

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

2023. 7.

충 남 대 학 교

(교무처 학사지원과)

〈 휴·복학 변경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 〉

○ 학기 초(9월 첫째 주) **졸업예정자**로 생성된 자는 **2차 휴학 신청기간**(2023. 9. 1. ~ 11. 24.)에 **휴학 신청**이 **불가능**하므로, **졸업예정자**에서 **제외** 요청(학사서비스센터, 학사지원과) 후 **휴학 신청** 가능

※ 1차 휴학 신청기간(2023. 8. 1. ~ 8. 31.)에는 별도 제외 요청 없이 신청 가능

○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본인 의사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학하는 최초 학기로 이월 가능

※ 휴학 신청 완료 후, 등록금 반환을 원하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상 【등록금반환신청(휴학)】 메뉴에서 직접 등록금 반환 신청 진행

※ 2023. 9. 1.(금) 이후 휴학 및 등록금 반환 신청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고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므로, 신중하게 등록금 반환 선택

※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(042-821-5133, 5138)로 문의

○ 수강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휴학 또는 복학할 경우 반드시 휴·복학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함

※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자동 휴학 처리되거나, 수강신청을 했다고 자동 복학 처리되지 않음

○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영할 학생은 휴학 신청 기간에 일반휴학을 한 후 입대휴학으로 대체하여야 함

○ 휴학 신청 전에 도서관 대출 도서를 반납하여야 휴학이 허가됨

○ 휴학 종료일 이전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 또는 휴학 연장을 하지 않으면 학칙 제37조에 따라 미복학 제적됨

○ 2023학년도 제2학기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휴학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고, 등록처리 확인 후 휴학하여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(등록금 미납 후 휴학 시 장학생 선발 무효/전액 장학생도 납부금액은 '0원'이라도 등록 확인 후 휴학해야 함)

○ 일반휴학 신청 후 휴학 취소할 경우 기간 내 1회에 한하여 본인이 직접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취소 가능, 다시 휴학 신청할 경우 학사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야 함

○ 휴학하여 이미 등록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휴학취소 불가

○ 외국인 휴학자 및 창업 휴학자의 복학은 일반 학생의 복학 절차와 동일

2023학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

Ⅰ 신청기간

□ 휴학

○ 일반휴학, 육아휴학

- 1차(신규신청/휴학연장): 2023. 8. 1.(화) 09:00 ~ 8. 31.(목) 18:00
- 2차: 2023. 9. 1.(금) 09:00 ~ 11. 24.(금)[수업일수 3/4선] 18:00

○ 입대휴학: 연중 수시

○ 창업휴학: 2023. 8. 1.(화) 09:00 ~ 8. 11.(금) 18:00

□ 복학

○ 일반복학: 2023. 8. 1.(화) 09:00 ~ 8. 31.(목) 18:00

○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, 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, 육아휴학 기간, 창업휴학 기간, 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으로 인한 휴학생의 복학

- 1차: 2023. 8. 1.(화) 09:00 ~ 8. 31.(목) 18:00
- 2차: 2023. 9. 1.(금) 09:00 ~ 9. 27.(수) [수업일수 1/4선] 18:00

※ 2023. 8. 31.(목) 18:00까지 복학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자동 무효 처리됨

※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휴학한 학생은 전역일 또는 귀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여야 함

※ **개강일(2023. 9. 1.) 이후 복학 신청하는 학생은 ① 복학원과 ② 사유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 공문으로 복학 신청하여야 함(제대복학은 학사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)**

Ⅱ 등록금 관련 사항

□ 휴학

○ **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**

- 일반휴학, 육아휴학, 입대휴학: 2023. 8. 1.(화) 09:00 ~ 9. 27.(수) 18:00

  ※ 위 기간 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 가능

- 창업휴학: 2023. 8. 1.(화) 09:00 ~ 8. 11.(금) 18:00

○ **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**

<일반휴학, 육아휴학>

- 등록금 이월: ~2023. 10. 30.(월)[수업일수 1/2선] 18:00까지
- 등록금 반환: ~2023. 11. 24.(금)[수업일수 3/4선] 18:00까지

<입대휴학>

- 등록금 이월: ~2023. 11. 24.(금)[수업일수 3/4선] 18:00까지
- 등록금 반환: ~2023. 11. 24.(금)[수업일수 3/4선] 18:00까지
- **2023학년도 제2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**: 2023. 11. 25.(토) 이후

※ 휴학 신청 시, 학적변동현황에서 학적변동 처리내역 반드시 확인
(입대휴학, 육아휴학은 신청내역 검토 후 담당자 승인이 필요하므로, 신청한 다음 날 처리내역 확인)

※ 등록금 반환 선택 시 학기 개시일 전부터 90일까지 학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반환금액 결정[자세한 내용은 재무과(821-5133, 5138)로 문의]

□ 복학

○ 등록금 이월(반환 미신청) 휴학생: 복학 신청으로 등록 처리

○ 등록금 반환 또는 미납부 휴학생: 복학 신청 후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납부

Ⅲ 휴학기간

○ 대학: 재학 중 **통산하여 6개 학기**

- 단, (수)의예과는 2개 학기, 재·편입학생은 다음과 같음

재·편입학 학년-학기	휴학기간	재·편입학 학년-학기	휴학기간
1-1	6개 학기	3-1	3개 학기
1-2	6개 학기	3-2	3개 학기
2-1	5개 학기	4-1	2개 학기
2-2	4개 학기	4-2	1개 학기

○ 대학원: 재학 중 **통산하여 4개 학기**(단, 석·박사통합과정은 7개 학기)

○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

-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
- 입대·육아·창업휴학 기간
- 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
- 총장이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해 특별히 허가한 기간

※ **질병휴학(일반휴학 중 세부사유가 질병인 경우) 기간은 휴학 기간에 산입함. 단,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(외국인 유학생만 해당, 내국인 제외) 등**의 2023학년도 2학기 휴학기간(사유: 코로나19 관련)은 **통산 휴학**[(6개 학기(대학), 4개 학기(대학원) 초과 금지 등] 기간에 **산입하지 않음**

※ **대학 신입학 및 재·편입학 학생은 병역의무이행, 육아휴학, 질병치료(입증서류 제출) 및 총장이 질병 치료·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허가한 경우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**

※ **학·석사 연계과정(석사) 입학생은 병역의무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,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은 병역의무이행, 6주 이상 입원을 요하는 질병(종합병원장 진단서 첨부) 또는 임신·출산·육아의 경우 이외에는 입학한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**

Ⅳ 신청방법

◈ 통합정보시스템, 학사서비스센터 방문, 외국인휴학, 창업휴학 신청으로 구분

1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휴·복학 신청

□ 신청구분

○ 2023. 10. 30.(월)[수업일수 1/2선] 이전 **일반휴학**(외국인 제외), **입대휴학, 육아휴학**

※ 2회(대학원은 1회) 초과 일반휴학은 학사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※ 2023. 9. 28.(목) 이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(등록금 분할 납부자는 등록금 완납 시) 휴학 가능

○ 2023. 8. 31.(목) 18:00 이전 **일반복학**(외국인 복학, 창업휴학 복학 포함)

○ 전역일자가 2023. 8. 31.(목) 이전인 **제대복학**

□ 신청방법

①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[아이디(학번), 패스워드]

② 학사행정 → 휴복학 및 미래설계상담 → 휴복학신청 → 신청/승인 상세내역에서 신규(신청) 클릭 → 신청구분 선택 → 변동사유 선택 → 입대휴학은 입영일자 입력 없이 첨부파일에 입영통지서 업로드, 제대복학은 전역일자 입력, 육아휴학은 첨부파일에 출산예정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업로드 → 저장 → 학생연락처 정정 클릭 →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, 이메일, 발송지 주소 확인 및 정정 → **저장 클릭**(휴복학 처리 완료 시 안내문자 발송)

※ '저장'이 아닌 '신규(신청)' 클릭 시 휴·복학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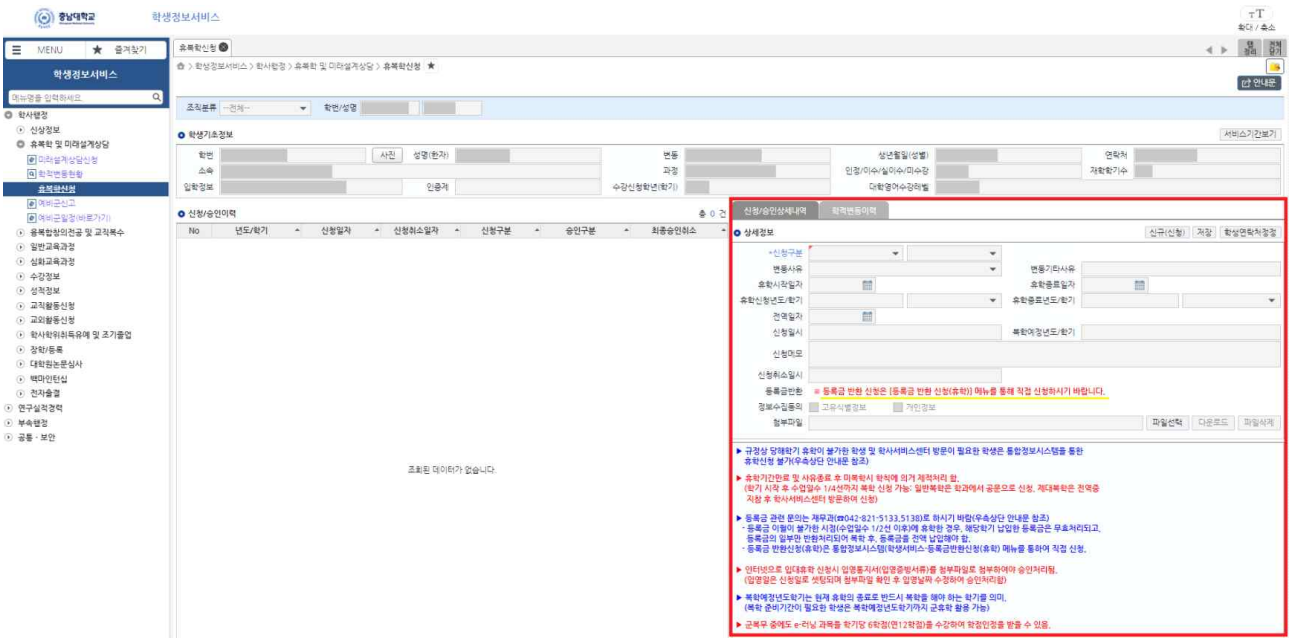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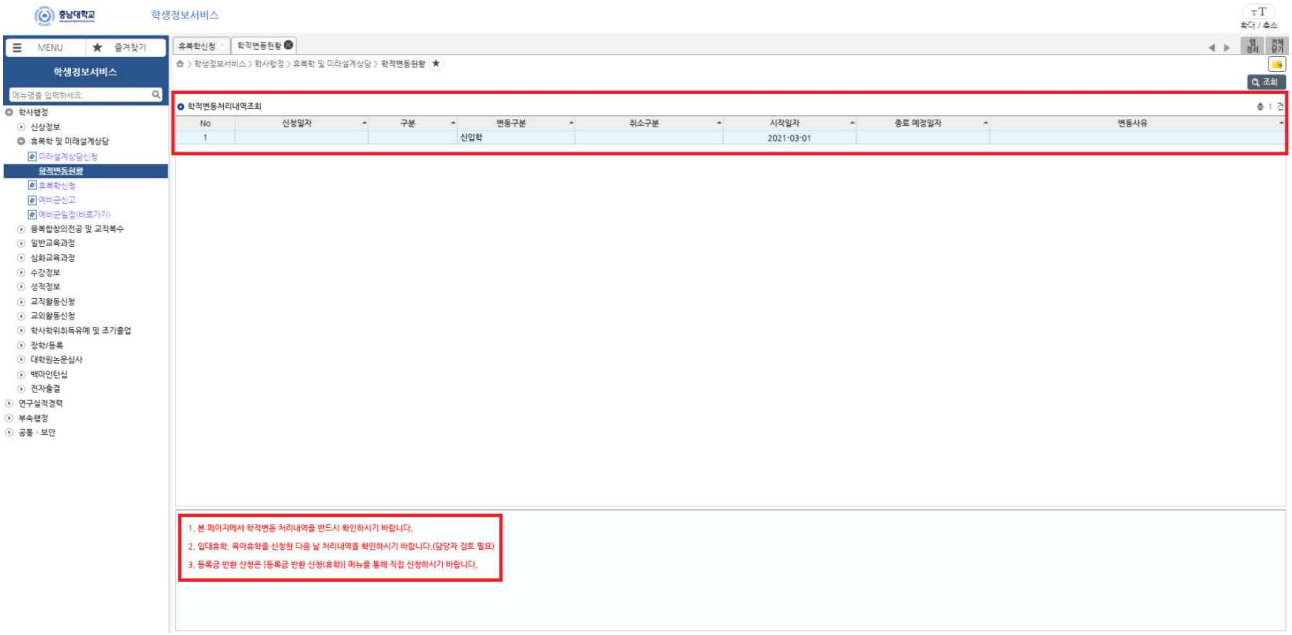

③ 휴·복학 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 → 학사행정 → 휴복학 및 미래설계상담 → **학적변동현황에서 학적변동 처리내역 반드시 확인**
(입대휴학, 육아휴학은 신청내역 검토 후 담당자 승인이 필요하므로, 신청한 다음 날 처리내역 확인)

2 학사서비스센터 방문을 통한 휴·복학 신청

※ 학사서비스센터 위치: 대학본부 별관(E7-1) 1층 108호

□ 신청구분

○ 신청횟수가 2회(대학원은 1회)를 초과하고 잔여 휴학기간이 있는 일반휴학

○ 2023. 10. 31.(화) 이후 일반휴학, 입대휴학, 육아휴학

○ 재입학생, 편입학생의 휴학

○ 전역일자가 2023. 9. 1.(금) 이후인 **제대복학**

○ 귀향복학

□ 제출서류

※ 대리인 신청 시 ① 학생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, ② 휴·복학 신청용 위임장 지참

○ 입대휴학(대체): 입영통지서 등 입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○ 육아휴학: 출산예정증명서(출산예정 3개월 이내), 가족관계증명서(만 8세이하)

○ 제대(귀향)복학: 전역(귀향)증 사본 등 전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※ 제대일자가 수업일수 1/4선(2023. 9. 27.) 이전인 경우, 전역예정증명서, 복무확인서 등 전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

※ 제대일자가 수업일수 1/4선(2023. 9. 27.) 이후인 경우, 휴가증 또는 휴가예정증명서 추가 제출

3 외국인 휴학 신청

국제교류과 방문 (담당자 확인)	→	**학사서비스센터 방문 (휴학원 제출)**

4 창업휴학 신청

창업지원단 창업교육센터 (휴학 신청)	→	**창업지원단 창업교육센터 (사전 심의)**	→	**학사서비스센터 (휴학 승인)**

※ 외국인 휴학자 및 창업 휴학자의 복학은 일반 학생의 복학 절차와 동일

V 학사관리 담당 부서 전화번호

구분		담당 부서	전화번호(지역번호: 042)
휴학, 복학	내국인	학사서비스센터, 학사지원과	(학사서비스센터) 821-5029, 5034 (학사지원과) 821-5031~3, 5036 ※ 학사지원과 위치: 대학본부 별관 1층
	외국인	국제교류과	821-5013 ※ 국제언어교육원(E1-1) 1층 103호
창업휴학		창업지원단 창업교육센터	821-5957
자퇴, 제적		학사지원과	821-5031~3, 5036
수강신청		학사지원과	821-5042
장학금		학생과	(교내장학금) 821-5081 (국가장학금, 학자금 대출) 821-5049
등록금		재무과	821-5133, 5138